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

의안 번호	813
----------	-----

발의년월일 : 2003. 7. 4.

발 의 자 : 송정현의원 외 8인

1. 주 문

- 지난 5. 9일과 5. 13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과 권기술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제6절 삭제)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법개정에 대하여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하여 건의문 채택

2. 제안이유

- 도축세 재원으로 가축 집단사육장, 도축장의 환경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긴요하게 사용
- 고성군의 도축세는 총세수의 1.4%로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도축세 폐지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예상

3. 참 고

- 가축사육 및 도축현황

도축세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관한

건의문(안)

지난 5. 9일과 5. 13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과 권기술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도축세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제6절 삭제)안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번 법개정에 대하여 우리군 의회 의원일동은 심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축세가 세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비록 미미한 규모가 될지는 몰라도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서는 그나마 큰 보탬이 되고 있고,

그 재원으로 가축집단사육장 및 도축으로 인한 환경수질 오염 방지,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시 공중위생보호 등에 정말 긴요하게 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축세 폐지 법안의 제안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소득세를 부담하는 축산농가의 도축세과세는
축산자조금, 소득세와 이중 부담이 되며,

둘째 도축세는 축산농가에 전가되어 연간 400~500억원의
생산비 부담이 되며,

셋째 도축세는 지방세중 0.2%내외로서 시·군의 세수감소는
미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선 농촌 시·군의 실정을 잘못 이해 한데서온
오해라고 생각하고 현 실정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산자조금, 소득세 등과 도축세가 이중 부담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소득세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나 도축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근거와 과세요건, 납세자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목이며,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축산단체에서 축산업자로부터 각출하는 것이므로 각각 성격이 다르므로 이중 부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축산농가에게 도축세 세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도축세의 납세 의무자는 소·돼지의 도살자로서 축산농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축산농가로부터 소·돼지를 매수하여 도축장에서 이를 도살하는 식육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유통업체 등이므로 도축세는 오히려 육류소비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작다는 점에 대하여는

경남도내의 도축세 총액은 54억원으로 도내 지방세수 총액의 0.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도축세 총액은 174백만원으로 우리군 총 세수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므로 이를 폐지할 경우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의원 모두는 만장일치로 도축세 보전 대책 없이는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현재 추진중인 지방분권화와 자주재원 확충에 역행하는 것으로 전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03. 7.

경상남도 고성군 의회의원 일동